

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5 |
|----------|---|

제출일자 : 2003. 1. 16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읍면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(주민자치과)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. 12. 31에서 2004. 6. 30 까지로 연장 조정하기 위함.

3. 법적근거

-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 연장승인
- [경남도 행정 13101 - 12463 (2002. 12. 4)]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(한시기구) 제7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법규의 개정)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“총무국, 120기동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를 “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,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제493호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유효기간) 제7조중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 <p style="margin-top: 20px;"><u><신설></u>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제493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한시기구) 제7조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조례 제493호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법규의 개정) 사천시의회의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제2호중 “총무국, 120기동대, 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 를 “총무국, 체육시설관리사업소”로 한다.</p> |